

<p>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이 제출되어 97년 4월 29일 議長으로부터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p> <p>97년 4월 30일 申炯植議員 外 12人으로부터 서울特別市法律顧問運營條例案이 접수되어 97년 5월 1일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p> <p>97년 5월 12일 李容富·鄭水華議員 外 42人으로부터 서울特別市立法·法律顧問運營條例案이 제출되어 97년 5월 12일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어 왔습니다.</p> <p>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hr/> <p>1.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長 提出)</p> <p>(11時 30分)</p> <p>○委員長 黃仁明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p> <p>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의 건을 상정합니다.</p> <p>(議事棒 3打)</p> <p>먼저 서울特別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企劃管理室長 都明正 企劃管理室長 都明正입니다.</p> <p>존경하는 黃仁明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잠전에 委員長님께서 인사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市에서는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 議員 여러분께서 제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특히 여름철을 대비해서 수방이나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p> <p>條例改正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간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p> <p>(幹部紹介: 政策企劃官 崔炳大)</p> <p>전임 林載五 政策企劃官은 城東區 副區廳長으로 전보되었습니다.</p> <p>(幹部紹介: 財政企劃官 金禹奭)</p> <p>전임 陳翼喆 財政企劃官은 市政開發研究院 事務局長으로 전보되었습니다.</p> <p>(幹部紹介: 企劃擔當官 金丙一)</p>	<p>전임 李 星 企劃擔當官은 市長室의 政策秘書官으로 전보된 바 있습니다.</p> <hr/> <p>(報告)</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p> <p>□이 개정안은 시립미술관 운영업무의 본청 이관, 시립대학교의 기능보강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p> <p>□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시립미술관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시설운영사업소 인력 29명을 감축해서 본청으로 조정하고,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정원을 24명 증원하며, ○도시과학대학 신설 및 시민대학 설치운영 등 시립대학교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실무인력 10명을 보강하고, 지하철 건설공사 일부구간의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현장인력 1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p>※정원조정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청 : 2,554명→2,583명(+29) · 의회사무처 : 197명→ 221명(+24) · 직속 기관 : 5,733명→5,743명(+10명) · 사 업 소 : 9,754명→9,715명(-39) <p>총 정 원 18,238명→18,262명(+24)</p> <p>□이상 말씀드린 개정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hr/> <p>감사합니다.</p> <p>○委員長 黃仁明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p> <p>○專門委員 張奉萬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p> <hr/> <p>(報告)</p> <p>I. 제안일자 및 제안자</p> <p>가. 제안일자 : 1997년 4월 22일</p> <p>나. 의안번호 : 제753호</p>
--	---

<p>다.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라. 위원회 회부일자 : 1997년 4월 29일</p> <p>II. 제안이유 시립미술관 운영업무의 본청 이관, 시립대 기능 보강 및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p> <p>III. 주요골자 가.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운영하던 시립미술관 관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 29명을 본청으로 조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정원을 24명 증원함.(안 제2조제2호) 다. 도시과학대학 신설 및 시민대학 설치 운영 등 시립대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직속기관에 10명을 보강하고, 지하철 건설공사 일부구간 공사 완공에 따른 사업소 현장인력 10명을 감축함.(안 제2조제3호·4호)</p> <p>IV.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p>	<p>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본청 2.의회사무기구 3.직속기관 4.출장소 5.사업소 6.자치구가 아닌 구 7.읍·면·동 및 그 출장소</p> <p>나. 예산조치 :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 540,864천원은 '97기정예산 활용</p> <p>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p> <p>V. 검토의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91.3.20. 조례 제3178호로 제정·운동하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본청요원을 29명 증원하여 2,554명에서 2,583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처는 24명을 증원하여 197명에서 221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10명을 증원하여 5,733명을 5,743명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요원에 있어서 39명을 감축하여 9,754명에서 9,715명으로 조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p>															
<p>〈정 원 개 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관 서 별</th> <th>현 행</th> <th>개 정 안</th> </tr> </thead> <tbody> <tr> <td>1. 본 청</td> <td>2,554명</td> <td>2,583명</td> </tr> <tr> <td>2. 의회사무처</td> <td>197명</td> <td>221명</td> </tr> <tr> <td>3. 직 속 기 관</td> <td>5,733명</td> <td>5,743명</td> </tr> <tr> <td>4. 사 업 소</td> <td>9,754명</td> <td>9,715명</td> </tr> </tbody> </table>		관 서 별	현 행	개 정 안	1. 본 청	2,554명	2,583명	2. 의회사무처	197명	221명	3. 직 속 기 관	5,733명	5,743명	4. 사 업 소	9,754명	9,715명
관 서 별	현 행	개 정 안														
1. 본 청	2,554명	2,583명														
2. 의회사무처	197명	221명														
3. 직 속 기 관	5,733명	5,743명														
4. 사 업 소	9,754명	9,715명														
<p>정원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본청의 경우 문화시설운영사업소 폐지로 시립미술관 운영업무가 본청 문화과로 이관되어 시립미술관요원 29명(일반직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으로 일반직 7명, 전문직 나급 1명, 다급 3명, 라급 2명, 마급 1명, 계 7명, 기능직 15명, 7등급 2명, 9등급 3명, 10등급 10명)을 이관받는 것이며 둘째, 의회사무처의 경우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직원 24명을 증원하는</p>	<p>것으로 10개 상임위원(운영, 내무, 재무, 생활, 보사, 수자원, 문교, 건설, 도시, 교통)의 요원 5급(지방행정사무관) 10명과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실과 특위, 의원연구실, 서소문별관 기자실요원 4명 등 14명, 지방사무보조원(필기) 증원과 아울러 도시정비위원회 전문위원실 행정 6급 1명을 지방토목 6급 1명과 공보실 의회보 편집요원 마급 1명을 라급 1명으로 2명의 상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업소의 경우 39명을 감축하는데 이것은 시립미술관 인력을 본청 요원</p>															

으로 29명을 이관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 일부구간 공사완료와 책임감리 실시에 따라 10명을 감축하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및 시민대학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요원 8명(행정직 7명+기능직 1명), 청사 신·증축에 따른 시설물유지 관리인력 2명 등 10명을 서울시립대학교에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지방 4급행정 또는 지방 4급상당 별정직 3명의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여 9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요원이 부족하여 현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특별위원회 겸직근무로 인하여 원숙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점이 있는바, 특위전문위원 확보는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24조(내무부 소관) 제13항제1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공무원결원보충승인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4급이상 공무원결원보충증원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1급이하 공무원결원보충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정건의가 집행부에서 상급관서에 있어야 하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에두는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4급이상, 기능직 4등급이상의 정원증원과 같은규정 제1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총정원과 같은규정 제16조에 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의 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관계법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하여 4급 경력직 및 기능직 4등급 직위요원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조항삭제를 위한 집행부의 꾸준한 개정건의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10개 상임위원회 5급 행정요원은 상임위원회 원숙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입법조사요원, 의원 자료제공과 업무분석요원으로 각 위원회별 2인으로 20명을 증원요청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 5급 행정직 1명씩 10명만 우선 증원조치되었

습니다.

[종합의견]

금반 제안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시의회사무처의 경우 의원님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3명, 상임위원회별 5급 행정요원의 10명 보충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반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仁明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金信浩委員님께서 서울特別市議會會議規則 제52조에 의거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하신 金信浩委員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信浩委員 金信浩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議會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97년 4월 22일 서울特別市長은 議會事務處 정원에 대하여 5급 행정직 10명, 기능직 필기원 14명 증원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 하였습니다만, 서울特別市議會는 10개 委員會와 10개 特別委員會가 있어서 5급 행정직은 議員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명 증원을 議長님이 증원 요구한 바 있으나 5급 행정직 1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추가 10명을 議會 차원에서 계속 증원 조치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議會 議員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의회보 제작을 위하여 편집요원 1명을 증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本委員은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우선 特別委員會 專門委員會室이 상설되어 있으므로 5급 행정직 1명과 질 높은 의회보 편집과 제작을 위한 전문직 마급 1명을 증원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